

■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[별표 3의3] <신설 2026. 4. 21.>

지정·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(제12조제3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의 기준	
		1차 위반	2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경우	법 제17조 제2항제1호	지정·등록 취소	지정·등록 취소
나.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	법 제17조 제2항제3호	시정명령	
다. 법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·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17조 제2항제4호	시정명령	
라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	법 제17조 제2항제5호	지정·등록 취소	

용을 청구한 경우 마.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 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 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	법 제17조 제2항제6호	시정명령	지정·등록 취소
바.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	법 제17조 제2항제7호	시정명령	지정·등록 취소
사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 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7조 제2항제8호	지정·등록 취소	
아. 그 밖에 정상적인 아이돌 봄 서비스의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	법 제17조 제2항제9호	시정명령	